속초시 고시 제2011 - 55호

도로명 부여 고시

『도로명주소법』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신설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11월 4일

속 초 시 장

○ 고 시 일 : 2011. 11. 04.

○ 고시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,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

○ 고시내용

일련번호	도로구간		연장	폭	도로명	도로명 부여사유
	기점	종점				
1	조양동 1450-2	청호동 432-83	500m	8m	해오름로188번길	해오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,8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2	대포동 13-9	대포동 13-54	660m	12m	농공단지1길	농공단지길의 시작지점에서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

○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도로명 변경신청	주민의견 수렴공고	심의 상정	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	결과 통보	공고 및 결과 통보	공고한 날부터
법인·단체 대표자, 건축물 소유자, 건물점유자(20세 이상 세대주)의 5분의1 신청	⇒ 10일이내	⇒ 30일 이내	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⇒ 10일 이내	신청인의 대표자	⇒ 30일 이내

서면동의	서면 동의 얻은 날로부터	고 시	서면 동의 얻은 날로부터	도로명시설 설치
주소사용자의 2분의 1	⇒ 10일이내	· 변 경 사 항 · 변경기준일	⇒ 30일이내	· 도 로 명 판 · 건물번호판

※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(☏033-639-272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